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
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12
----------	-----

2021. 9. 7.(화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최경천 의원

나. 발의일자: 2021년 8월 25일

다. 회부일자: 2021년 8월 27일

라. 상정일자: 2021년 9월 3일

(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최경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,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‘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’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함 (안 제5조)
 - 학업중단 학생 별 원인분석 및 맞춤형 지원
 - 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지원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(안 제6조)
- 기타 기존 조례의 미비점 보완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서성범)

- 본 조례안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,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2조에 “보호관찰 대상 학생”을 ‘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’으로 정의하였음.
-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수립하는 ‘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’의 내용에 “학업중단 학생 별 원인분석 및 맞춤형 지원”과 “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지원”을 새로 추가하였음.
- 안 제5조의 개정에 따라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때 개인별로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면 그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

기대되고,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업중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에 ‘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’을 추가하였음.
- 그 밖에 안 제5조제1항 및 안 제9조의 개정 규정은 기존 조례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.
-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보호관찰 대상 학생” 이란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학업중단” 을 “학업중단 예방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학업중단 학생 별 원인분석 및 맞춤형 지원
4. 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지원

제6조제1항 중 “교육감은” 을 “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및” 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충청북도지방경찰청” 을 “충청북도경찰청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제5조(시행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해마다 <u>학업중단</u>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제6조(재정지원) ① <u>교육감은</u>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“<u>보호관찰 대상 학생</u>”이란 「<u>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.</p> <p>제5조(시행계획 수립) ① ----- ----- <u>학업중단 예방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학업중단 학생 별 원인분석 및 맞춤형 지원</u>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4. <u>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지원</u></p> <p>5. ~ 7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</p> <p>제6조(재정지원) ① <u>교육감은 학교</u>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및 -----</p>

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
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
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
원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충
청북도, 충청북도지방경찰청, 청
소년육성단체, 대안교육기관 등
과 「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
청소년 교육지원 실무협의회」를
구성·운영하여 학업중단 예방과
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
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
력하여야 한다.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-----
----- 충청북도경찰청-----

-----.

관계 법령

□ 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21. 6. 23.] [법률 제17664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28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 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3.>

1. 성격장애나 지적(知的)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

2. 학업 중단 학생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2. 3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2. 3.>

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2. 3.>

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, 교육감은 이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2. 3.>

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6.

12. 20., 2021. 3. 23.>

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<신설 2016. 12. 20., 2021. 3. 23.>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3. 23.] [법률 제17974호, 2021. 3. 23.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4. 21.] [법률 제17505호, 2020. 10. 20., 타법개정]

제3조(대상자)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(이하 “보호관찰 대상자”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형법」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

2. 「형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
3. 「형법」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
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
 4.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
 5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- ② ~ ③ 생략

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조례안 제5조에 따라 학업중단 학생 별 원인분석 및 맞춤형 지원 사업과 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 소요되고, 안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 개정안은 학생들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재정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.